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아파트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동법 57조 8항에 의거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류제출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 예약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1/gimhae2/>)로 예약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및 심사기한	• 2021.04.30.(금)부터 ~ 2021.05.07.(금) 17:00까지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전원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남 김해시 안동 360-42 / 055-328-5677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 제출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청약신청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혼인 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의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서류	본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처: 해당직장 및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발급처:세무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있는자 포함)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군인)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세대구성원 소득증빙 서류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전체 포함 발급)
대리인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및 주소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초과~ 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